

1999. 12. 24.(금)

제55회정기회제8차본회의

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總 務 委 員 會

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2. 14. 제 천 시 장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2. 14.
- 다. 상 정 일 자 : 1999. 12. 20. (제5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이두호)

가. 제안이유

- 제천시 사무중 일부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는 물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기하고자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 정 : 제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제규정 수록
 - ▶ 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

- ▶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
 - 조사, 검사, 검정, 관리 업무등 시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관계 되지 아니한 사무
(단순사실행위,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, 전문지식, 기술을 요하는 사무, 시설관리등 단순행정사무)
- ▶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음.
- ▶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의 공개 모집원칙
- ▶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과 위탁대상 사무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
- ▶ 수탁사무처리의 지원은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
- ▶ 지휘 감독 및 매년 1회 이상의 감사 시행 등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태훈)

○ 법규적검토
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따르면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, 검사, 검정,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.” 고 규정되어 있고
-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조례 제정안이 마련됨과 아울러

- 행정자치부 조례준칙(안)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법령 규정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○ 행정적 검토

- 동 제정 조례는 '99. 12. 13일 '제천시 조례. 규칙심의회' 개최결과 원안대로 심의 의결된바 있고
- 입법 예고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므로 행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할 것이나
- 제7조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규정은 “시정조정위원회 위원과 위탁대상 사무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”고 되어 있는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서 제시한 “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”라는 권고조항이 누락되어 있어
- 결국 민간인 전문가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고
-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규정이 없는 관계로 불이익에 대한 구제 요건이 미흡하다고 사료됨으로
- 향후 조례 개정시에 이를 검토,보완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- 질의답변 없음.

5. 토론요지

토론 없음.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7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1부. 끝.